##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53

발의연월일: 2025. 1. 20.

발 의 자:신영대・윤준병・안호영

박희승 • 전재수 • 김정호

이개호 • 박성준 • 염태영

한준호 • 박홍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조사휴가는 취업규칙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경조사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대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근로자가 경조사휴가를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가족 친화적 문화 등 현대 노동 환경의 중요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함.

또한 기업의 규모나 근로계약의 유형에 따라 경조사휴가의 운영 편차가 크고 유급휴가 여부도 달라 노동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경조사휴가 최소기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의

사망 등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경조사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혼, 입양 또는 가족의 사망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별 표 2의 기준에 따른 휴가(이하 "경조사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의 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57조에 따른 보상 휴가 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경조사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경조사휴가일수표(제6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비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62조의2(경조사휴가) ① 사용자
	는 근로자가 결혼, 입양 또는
	가족의 사망 등의 경조사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
	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
	른 휴가(이하 "경조사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경조사휴가의 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57
	조에 따른 보상 휴가 또는 제6
	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경조사휴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	제80조(장해보상) ①
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	
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u>별표</u> 에서 정	<u></u> 별 <u>표 1</u>
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	
상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